

# 예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제 57 호

제출년월일 : 2003. 3.  
제 출 자 : 예산군수

## 1. 개정이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정수하는데 문제가 없어 단서규정 삭제하고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법인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 징한다는 단서규정 삭제(안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안제6조)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는 부동산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안제25조제1항)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및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자료
  - 충청남도 세정13400-2077(2002. 12. 5) 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달

예산군 조례 제 호

##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p> <p>1. ~ 4. (생략) 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동일)</p> <p>②-----</p> <p>-----</p> <p>&lt;단서 삭제&gt;</p> <p>1. ~ 4.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u>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p> <p>①-----</p> <p>-----</p> <p><u>&lt;단서 삭제&gt;</u></p> <p>1. ~ 4.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